

『하나-ONE 해외송금서비스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0년 5월 21일

2. 개정내용 : 면책조항 문구 수정, 당행 명칭 명확화, 문구 수정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9 조 (거래 외국환은행 지정)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<u>하나은행</u>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 9 조 (거래 외국환은행 지정)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<u>(주)하나은행</u>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</p>	당행명칭 명확화
<p>제 14 조(서비스의 이용,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)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<u>은행에 서면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서비스의 해지 및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.</u></p>	<p>제 14 조(서비스의 이용,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) <u>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은행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</u></p>	문구 수정
<p>제 15 조 (면책) 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아래 각호의 경우 <u>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</u> 1. 등록된 송금정보 오류, 수취은행(중계은행 포함)의 귀책사유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2. 천재지변,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</p>	<p>제 15 조 (책임) 1.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등록된 송금정보 오류, 수취은행(중계은행 포함)의 귀책사유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2. 은행은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p>	면책조항 문구 수정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